

2014년도 보충협약 합의서

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노동조합은 2014년도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합의한다.

□ 보충협약 내용

현 행	개 정 안
<p>제64조(문화 체육 활동 지원) ① 기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.</p> <p>② 기관은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기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연중 1일을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조합원의 체육 및 문화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, 시설 등 편의를 제공한다.</p> <p>④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체육대회(워크숍 포함)를 개최하고 개최일 등 세부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.</p> <p>⑤ 기관은 매월 1회 하루 중 오후를 팀워크(teamwork)의 날로 정한다.</p>	<p>제64조(문화 체육 활동 지원) ① 기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 운영한다.</p> <p>② 기관은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기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연중 1일을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, 조합원의 체육 및 문화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, 시설 등 편의를 제공한다.</p> <p>④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체육대회(워크숍 포함)를 개최하고 개최일 등 세부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.</p> <p>⑤ 기관은 매월 1회 하루 중 오후를 팀워크(teamwork)의 날로 정한다.</p> <p>⑥ 제3항·제4항 및 제5항의 활동은 근무 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(신설 '14.9.30)</p>

2014. 9. 30.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원 장 정재훈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노 동 조 합
위 원 장 남경우